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74
----------	-----

2019년 4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19년 3월 29일
- 다. 회부일 : 2019년 4월 1일
- 라. 상정일 : 제28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4월 23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황인식)

가. 제안이유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공공시설 유희공간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공공시설 유희공간 사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8조제5호).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입법예고(2019. 2. 21. ~ 3. 13.)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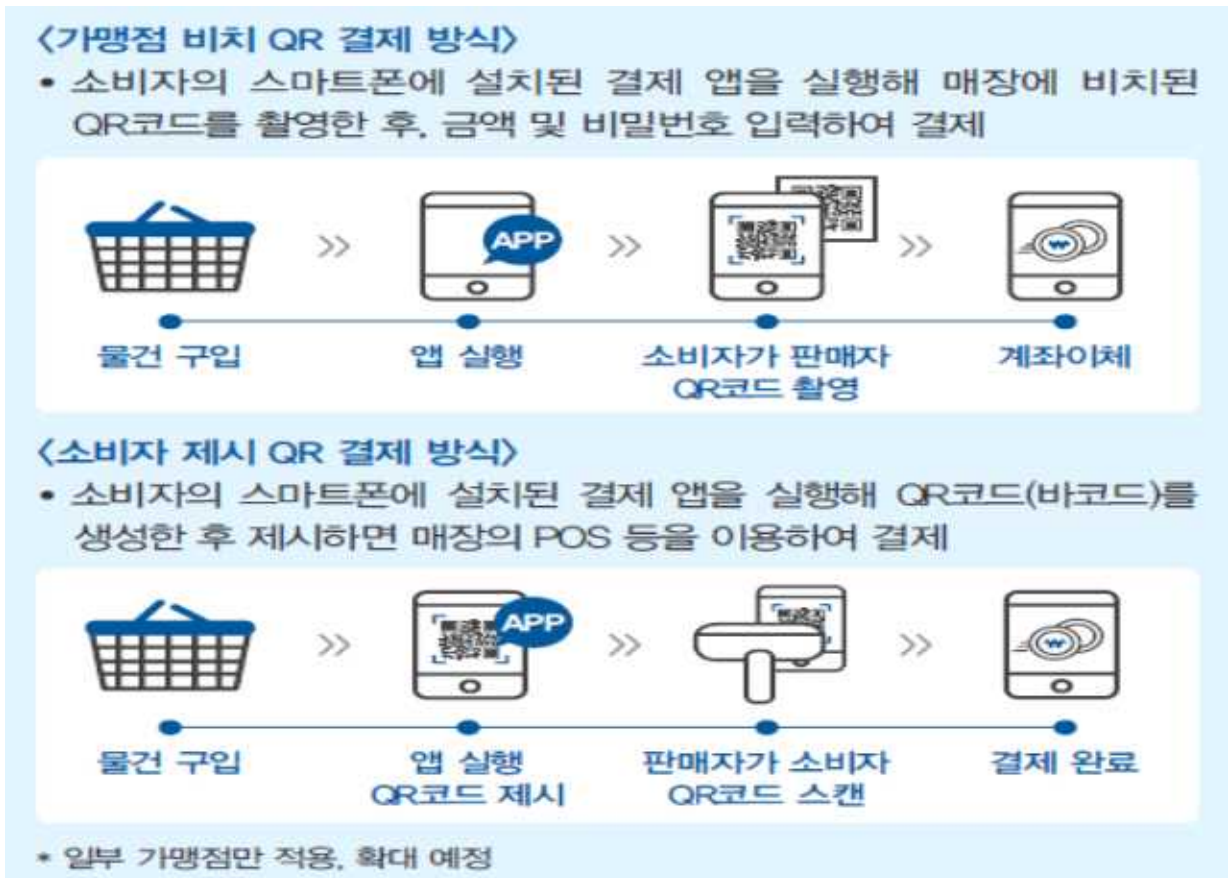
-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제로페이)이용자에 대하여 서울시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100분의 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안 제8조 제5호)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는 2018년도 말 기준 1,255개의 공공시설 유희공간(서울시 시설 5개, 자치구 시설 1,250개)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대강당, 소강의실, 세미나실, 운동장, 테니스장 등을 직접 사용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음,

〈서울시 인재개발원 시설현황〉

구분	강의실명	면적(m ²)	수용인원	비고
강의 시설	대강당	649	516	
	소강당	438	200	
	인재홀	440	90	국제회의장
	1강의실	185	100	
	2강의실	185	100	
	3강의실	123	70	
	4강의실	123	70	
	5강의실	123	70	
	201강의실	72	30	
	202강의실	56	20	
	203강의실	56	20	
	204강의실	108	60	
	301강의실	144	70	6급미래양성 전용강의실
	302강의실	112	20	
	303강의실	51	24	
체육 시설	운동장	9,487		
	테니스장	2,885		
다솜관	숙소	23	2	30실

※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결제 수수료를 낮추고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은행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가 이뤄지며, 스마트폰 간편결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하고 카메라로 매장 내 QR코드를 찍으면 결제할 금액이 뜨고 비밀번호나 지문인식 등으로 인증하면 결제되는 방식임.



※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IMF 극복방안(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 내수소비·소득투명성 확대, 세금탈루 억제 등)의 부작용(무분별한 소비, 신용불량자 양산 등)과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과도한 사회적 비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 비용, 중간매개자-VAN社¹⁾와 PG社²⁾-의 수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였음.

1) VAN(Value-Added Network)이란, 부가가치 통신망이라는 뜻으로 가맹점과 카드사간 네트워크망을 구축하여 수많은 매장들과 카드사들이 일일이 계약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 VAN사는 가맹점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카드승인 중계업무를 수행하며, 동시에 가맹점이 카드결제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카드 매출데이터를 정리하고 제출된 카드전포 매입 업무를 대행한다. 이에 카드사는 VAN사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 동 개정조례안은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해소와 함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사용 활성화,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전가(가맹점주 및 소비자)를 차단하여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행정국은 서울시 공공시설 유희공간의 사용료를 감면하여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p>제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 각 기관이 교육 또는 행사목적으로 사용 시 전액 면제 2. 서울특별시 직원단체 또는 직원동호회가 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 시 전액 면제 3. 국가기관, 공공단체, 서울시 자치구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 시 50% 감액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가 사 	<p>제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 각 기관이 교육 또는 행사목적으로 사용 시 전액 면제 2. 서울특별시 직원단체 또는 직원동호회가 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 시 전액 면제 3. 국가기관, 공공단체, 서울시 자치구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 시 50% 감액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가 사

2) PG(payment Gateway)사는 온라인 카드결제 혹은 전자결제가 가능하도록 전자지불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용카드, 핸드폰, ARS, 계좌이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모든 온라인 결제를 대행하고 카드사나 금융기관과의 결제중계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카드결제의 경우에는 PG사가 온라인가맹점과 최종당사자인 카드사를 직접 중계하지 않고 VAN을 거쳐 중계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PG사와 VAN사, 카드사까지 3단계에 걸쳐 수수료를 지불한다.

현행	개정안
<p>용 시 50% 감액 <u>〈신 설〉</u></p>	<p>용 시 50% 감액 <u>5.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 결제 시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u></p>

- 다만, 서울시 인재개발원 사용료 감면의 조례 규정 가능 여부, 감면범위 및 비율의 적정성, 제로페이 정책의 타당성, 감면기간의 타당성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첫째, 서울시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교육훈련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 등을 국가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서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법적 근거와 절차적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하겠음.
- 다만,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개정안에서 정한 사용료 감면비율(5%)이 적정한지 여부와 조정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둘째, 동 조례와 같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1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감면비율을 각각 달리 규정 (30%, 10%, 5%)하고 있는 바,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료 감면율을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연번	구분	조례명	감면대상	감면율
1	조례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장 입장료, 체육시설 개인연습사용료, 생활체육교실 수강료	다음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입장료: 30% 사용료: 10% 수강료: 5%
2	조례	도시공원 조례	서울대공원 등 입장료, 공원시설 이용료	다음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입장료: 30% 이용료: 10%
3	조례	서울상상나라 운영 조례	서울상상나라 입장료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4	조례	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립과학관 관람료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5	조례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시민청 시설 대관료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6	조례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교통문화교육원 교양 취미 프로그램 이용료 및 시설 이 용료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7	조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8	조례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 등의 보조기기 임대 및 맞 춤제작 비용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9	조례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여성발전센터 강좌 수강료 및 시설 이용료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10	조례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사용료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11	조례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한강공원 내 유람선, 체육·휴양시 설 등 이용료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12	조례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립청소년수련관 등의 체육시설, 강당 등 사용료 및 예체능 등 강습료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13	조례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서울50플러스캠퍼스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및 강당, 교실 등 사용료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14	조례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인재개발원 내 강의·체육시설 사용 료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15	조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 한 조례	회의실, 강당 등 사용료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16	조례	영어 및 창의마을 조례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및 서울영 어마을 수유·관악캠프 이용료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17	조례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립장사시설(화장시설, 봉안당, 자 연장지) 사용료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참고	규칙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대한 규칙	서울자유시민대학 강좌 학습비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 셋째, 서울시는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제로페이 할인 추진계획(시장방침)에 따라, 감면내용과 관련하여 감면대상을 제로페이 결제자로 하고, 감면비율은 수요와 이용요금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는 부분은 일면 타당하게 보이나, 행정국은 제로페이 감면적용에 있어 다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중복적용을 배제하고자 하고 있어, 중복감면(사회적 배려계층 : 이용료 100%감액, 다둥이 : 이용료의 50%감액) 사항에 중복적용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제로페이의 중복적용 〉

- 중복적용 : 다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적용 배제
 - ▶ 장애인·국가유공자(80%), 다둥이(30~50%), 경차·저공해차량(50%), 요일제 참여(30%), 사회적 배려 계층(100%), 단체할인 등 기존할인율이 높아 제로페이 추가 할인에 따른 유인효과가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 미추진
- 출처 :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제로페이 할인(감면) 추진계획(시장방침), 4p 발췌

※ 행정국(인재개발원)은 사용료 감면에 따른 감면손실액은 50십만원 규모로 추계하고 있음.

〈 인재개발원 사용료 제로페이 감면 손실액 추계 〉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료 수입		
	감면액 추계(A-B)	감면이전 징수 추계(A)	감면이후 징수 추계(B)
5% 감면 적용시	467	31,110	30,643

- 넷째, 서울시는 제로페이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수수료를 인하(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³⁾)하여, 연매출이 소액인 가맹점에서는 신용카드와 제로페이의 수수료 격차가 감소하였고,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로페이는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계좌이체도 금융기관(은행) 간 수수료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신용카드사를 계열사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8.11.26.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금융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로페이 정책에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동기가 없을 수 있으며,

제로페이 이용자가 기존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신용공여기능(후불결제 기능), 포인트 적립, 편리성, 실적에 따른 대출이자율 감면 등 편익을 포기하고 제로페이를 이용할 충분한 유인효과도 적다고 하겠음.

- 또한, 가맹점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결제방식이 용이하거나,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결제 방식에 주력하는 등 사용자(판매자)에게도 유인동기가 적을 수 있고,
- 한정된 시장에서 공공기관의 제로페이의 활성화는 이미 보급을 시작한 민간의 직불 결제 방식(체크카드 및 민간회사의 직불결제 시스템(네이버, 카카오 등))과 중복 소지도 있으며,
- 제로페이는 신용카드의 단점을 보완한 대체제가 아닌 ‘소비자의 선의에 의지하여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시민들의 인식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다섯째, 안 부칙 제2조는 본 감면의 유효기한을 금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⁴⁾」에서는 조례에 따른 감면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제로페이 사용에 따른 감면은 한시적(약 6개월 간, 2019.12.31.까지)인 것으로 상위법령에는 부합하다고 하겠으나,

- 제로페이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감면기간을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감면기간을 확장설정(2020년 12월 31일 이후까지)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4)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 한편, 동 조례에 따라 인재개발원 사용료를 전액(서울시 기관의 교육 또는 행사, 체육활동) 또는 50%(국가기관, 공공단체, 서울시 자치구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사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가 사용)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연도별 시설 사용료 감면 사용실적이 감소하고 있는바, 사용실적 감소에 대한 원인분석과 공간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보완대책 및 계획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3년간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감면 사용실적〉

년도	시설별	감면현황	횟수	사용료 감면 조항
2018	강당 등	전액면제	11회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8조 1항 서울시 기관
		50%감면	3회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8조 3항 공공단체 및 국가기관
	운동장	전액면제	2회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8조 1항 서울시 기관
		50%감면	-	-
2017	강당 등	전액면제	20회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8조 1항 서울시 기관
		50%감면	23회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8조 3항 공공단체 및 국가기관
	운동장	전액면제	3회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8조 1항 서울시 기관
		50%감면	-	-
2016	강당 등	전액면제	15회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8조 1항 서울시 기관
		50%감면	3회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8조 3항 공공단체 및 국가기관
	운동장	전액면제	3회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8조 1항 서울시 기관
		50%감면	-	-

- 종합적으로 동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법적 근거와 절차적 요건은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감면비율을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은 없는지, 중복 혜택의 소지는 없는지, 감면기간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행정국의 종합적인 검토 및 대안마련 노력 등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74
----------	-----

제출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8조제5호)
- 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 (2)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9. 2. 21. ~ 3. 13.)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 결제 시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8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 각 기관이 교육 또는 행사목적으로 사용 시 전액 면제 2. 서울특별시 직원단체 또는 직원동호회가 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 시 전액 면제 3. 국가기관, 공공단체, 서울시 자치구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 시 50% 감액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가 사용 시 50% 감액 <p><신 설></p>	<p>제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 각 기관이 교육 또는 행사목적으로 사용 시 전액 면제 2. 서울특별시 직원단체 또는 직원동호회가 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 시 전액 면제 3. 국가기관, 공공단체, 서울시 자치구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 시 50% 감액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가 사용 시 50% 감액 5. <u>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 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 결제 시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u>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단위:천원)

구분	시설사용료 수입		
	감면액 추계(A-B)	감면이전 징수 추계(A)	감면이후 징수 추계(B)
5%감면 적용시 (실감소분 1.5% 적용) '19년6월~12월	467	31,110	30,643

4. 작성자

부서명 :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성명 : 홍대화 주무관

(3488-2058)